

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 | <h1>보도자료</h1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미래창조 금융 · 따뜻한 금융 · 튼튼한 금융 |
| | <h2>12.2(수) 10:30부터 보도 가능</h2> | |

| | | | |
|------|--|------|--|
| 작성부서 |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, 전자금융과 | | |
| 책임자 | 이윤수 과장 (2156-9810) 김동환 과장 (2156-9490) | 담당자 | 김윤희 사무관 (2156-9812) 윤덕기 사무관 (2156-9491) |
| 배포일 | 2015. 12. 2.(수) 10:30 | 배포부서 | 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3매 |

제목 : 임종룡 금융위원장,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 발급

- ▶ '금융개혁의 일환'으로 금융실명제 도입('93년) 22년만에 「금융실명법」·「전자금융거래법」상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('15.12.1.)
- ▶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*을 적용한 계좌개설 업무 개시(신한은행)
 - * 3중확인: (①신분증 촬영) + (②영상통화 또는 ④기존계좌 활용 중 택1) + (⑥휴대폰인증)
 - 또한, 생체인증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대면창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처리하는 무인(無人) '스마트점포(디지털 키오스크)*' 출시
 - * 3중확인: (④신분증 투입) + (②영상통화 또는 ⑤손바닥정맥지도 중 택1) + (⑥OTP/ARS인증)

I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

□ 금융위원회는 「금융실명법」·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실명확인을 '복수의 비대면 방식*'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(유권해석, '15.12.1.)

- * (이중확인: 필수) ①신분증 사본 제출, ②영상통화,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, ④기존계좌 활용, ⑤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(생체인증 등) 중 2가지 의무 적용
- * (다중확인: 권고) ⑥타기관 확인결과 활용(휴대폰인증 등), ⑦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~⑦ 중 추가확인 권고

○ 「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」(은행연합회·금융투자협회 공동 마련)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,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*를 충분히 거친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활용 가능

- * (시스템 안정성 테스트) 은행이 비대면확인 절차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테스트 (은행내부 테스트)
- * (시스템 보안성 테스트) 명의도용을 통한 계좌개설 시도를 효과적으로 방어, 차단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 (전문기관(금융보안원) 또는 은행간 교차검증)
- ※ 신한은행의 경우 3개월간 안정성 테스트('15.8~10월) 후 1개월간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테스트('15.11월)를 거쳐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개시

II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개시

<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 >

- 일시·장소: '15.12.2.(수) 10:30~11:00, 신한은행(본점)
- 주요 참석자: 임종룡 금융위원장, 조용병 신한은행장, 김종화 금융결제원장, 전 용 금융보안원 본부장,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
- 행사내용: ①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서비스 소개
② 비대면 업무 시연: i)계좌개설(휴대폰), ii)OTP 발급(스마트점포)
- ※ 서비스에 대한 상세내용은 신한은행 보도자료 참고(홍보부, ☎2151-3305 ~ 6)

- 신한은행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*을 적용한 계좌개설 업무 개시
 - * 3중확인: (①신분증 촬영) + (②영상통화 또는 ④기존계좌 활용 중 택1) + (⑥휴대폰인증)
 - 또한, 생체인증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대면창구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무인(無人) '스마트점포(디지털 키오스크)*' 출시
 - * 3중확인: (①신분증 투입) + (②영상통화 또는 ⑤손바닥정맥지도 중 택1) + (⑥OTP/ARS인증)
- 임종룡 위원장은 「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」에 참석하여 직접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을 발급받음
 - (계좌개설) 휴대폰 인증(⑥) 후 신분증을 촬영(①)하고, 상담원과 영상통화(②)(3중확인)를 거쳐 새로운 계좌번호를 부여받음



- (금융거래) 디지털 키오스크에 신분증을 투입(㉠)하고 손바닥정맥지도 인증(㉡) 또는 영상통화(㉢) 후 OTP/ARS 인증(㉣)(3중확인)*을 거치면 통장·카드 발급, 예적금·펀드 가입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 가능



1] 최초 거래시에는 영상통화만 선택 가능 →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손바닥 정맥지도 정보 입력 이후 거래시부터 바이오인증 또는 영상통화 중 택1 가능

III 평가 및 전망

- 임중룡 위원장은 “금융개혁”을 통해 금융산업에 ‘경쟁과 혁신’이 보다 확산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
 -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점차 정착되면 은행은 단순업무를 점차 스마트점포로 대체하고, 창구에서는 심층적인 고객상담·자문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가능
 - 스마트점포는 야간·주말 등 영업점 업무시간 외(매일 07:00~23:30)에도 이용할 수 있는 탄력점포로서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증진
- 여타 금융회사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접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준비 중이므로 대국민 금융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